

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· 징수 공고

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(제10566호)」 제47조제2항,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, 제3항에 의거하여 '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· 징수'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. 23.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

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요

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(이하 "의료중재원"이라 한다)의 조정 성립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

의료사고 피해자의
신속한 구제 도모

+

보건의료기관의
재정적 부담 경감 및
보건의료인의 안정적
진료환경 조성

관련 법령

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2항 및 제4항
 - 제2항 :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
 - 제4항 : 대불비용의 납부방법
-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~ 제3항
 - 제1항 :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목표액 승인(보건복지부 장관)
 - 제2항 :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징수액 결정
 - 제3항 :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공고

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■ 적립 목표액 : 2,353,227,500원

2018년도 대불비용 부담액
부과 및 징수

■ 부과 대상자 :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9,675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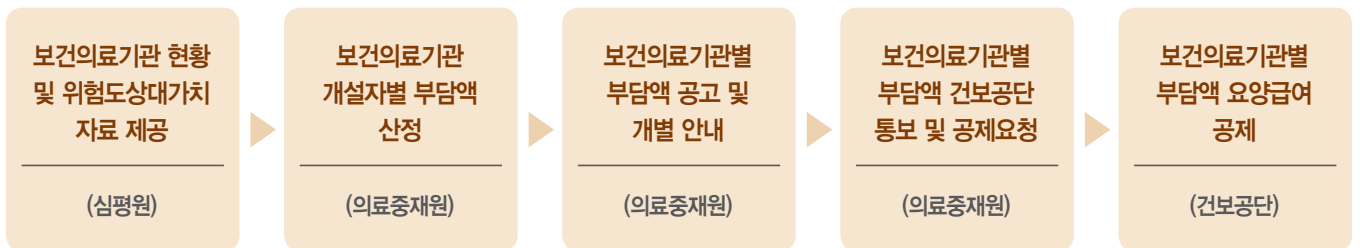
※ 단, '17.1.1. 이후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추후 부과 예정

■ 부과대상자별 부과금액 : 79,300원

- 기준 : 보건의료기관 종별(의원급) 평균부담액을 정액으로 부담

부과 방법	납부 방법 및 시기
<p>■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공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,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등 공고 <p>■ 대불비용 개별 부담액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, 납부시기 등에 관한 개별 안내문 발송 ●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	<p>■ 요양급여비용 공제 : '18. 2. 23. ~ '18. 12. 31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(법 제47조제4항) <p>■ 가상계좌 납부 : '18. 2. 23. ~ '18. 12. 31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 ※ 상기 일정은 일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<p>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대불비용 부담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

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절차 및 체계



재원의 관리 · 운용

- 의료중재원의 예산과 별도 관리 · 운용
-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· 운용